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과 지방○○○○○ ○○○
(전 ○○과)
- ② 광주광역시 동구 ○○○○과 지방○○○○○ ○○○
(전 ○○과)
- ③ 광주광역시 북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7. 28.부터 2014. 12. 31.까지 동구 ○○과에서 근무하면서 ‘○○○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의 사업담당자로, 지방○○○ ○○ ○○○은 2014. 3. 7.부터 2016. 1. 17.까지 동구 ○○과에서 근무하면서 ‘○○○시장 아케이드(2차구간) 조성공사 관급자재(폴리카보네이트) 구매’의 사업담당자로, 지방○○○○○ ○○○은 2012. 2. 1.부터 2014. 7. 20.까지 북구 ○○과에서 근무하면서 ‘○○○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급자재’의 사업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아(국비 60%, 지방비 37%, 시장 자기부담 3%)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최근 4년간 50,257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개량, 소방설비 보강, 공영주차장 건립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전통시장 아케이드¹⁾ 지붕재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광주광역시 동구 및 북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 관급자재(폴리카보네이트) 구입’ 계약 등 3건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광주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하였다.

[표]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

사업명	착공(계약) 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구매내용	비고
합 계(3개사업)	6건	1,029,161				
○○○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폴리카보네이트 외)	‘14.11.28.	285,000	조달수의	(주)○○기업 ○○○	아케이드 지붕재	동구
○○○시장 아케이드(2차구간) 조성공사 관급자재(폴리카보네이트) 구입	‘15.12.28.	80,500	조달수의	(주)○○○ ○○○	아케이드 지붕재	동구
○○○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급자재 구입	‘13.12.30.	140,188	조달수의	(주)○○○ ○○○	투광성 지붕판넬	북구
	‘13.12.20.	179,778	조달수의	(주)○○○ ○○○	개방형지붕	
	‘13.12.20.	95,357	조달수의	(주)○○○ ○○○	지붕판연결재	
	‘13.12.30.	248,338	조달수의	(주)○○○○○○○○○ ○○○	측면창호	

※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줄지어 늘어선 기둥(列柱)으로 지탱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하여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 통로 공간을 말한다. 아치형 구조는 비가 올 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 공간

그리고 아케이드 지붕재인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 ‘100%재생 가능한 알루미늄 코팅을 적용’한 제품, ‘고하중에 견디며 복층구조로 단열성능을 강화’한 제품, ‘난연재로 자외선 차단 세라믹 코팅을 적용’한 제품 등 각 업체별로 일부기능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시장 아케이드 지붕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위 관급자재를 제조하는 업체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지침(이하 “지원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경우 상인대표 2인 이상 등 총 7인 이상으로 추진위원회로 구성하며 추진위원회는 사업내용, 사업방향,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며, 시설사업 집행 시 5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 등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 시장의 아케이드 사업²⁾을 추진함에 있어 상기 규정 등에 따라 시장 상인회,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부터 지붕의 형태, 디자인, 형식, 재질 등을 결정하고, 주요자재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품(재질)의 유사한 기능을 생산하는 업체 등으로 부터 시장 조사 등을 통해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양(아케이드 지붕재에 필요로 하는 기능 등)만을 결정한 후 가격 및 성능 등이 우수한 제품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정하고 일반경쟁 방식으로 구매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였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및 북구에서는 ○○시장 등 3개 시장의 아케이드

2) ○○○○시장 아케이드 사업 : (사업기간) '15. 4. 20 ~ '16. 2. 29., (사업규모) 아케이드 1,818㎡, (계약금액) 1,750백만원, (계약상대자) ○○건설(주) 대표 ○○○ 외 1,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붕의 주요자재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선정함에 있어 제품의 가격, 성능, 내구성 등을 비교하고 예산절감 방안 등을 고려하고 특허(신기술) 제품 선정 시 계약심사 등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제품을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객관적인 근거 없이 2~3개 특정업체의 특허(신기술 등) 제품을 지명하여 업체로부터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제품을 결정한 후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세부적으로 ○○시장의 경우 업체의 제품은 “직사광선 빛 투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제품 변형을 방지하는 등”의 사유와 대체·대용품 검토사항으로는 “구조물에 고정하는 패널연결자재로서 물품을 분리하여 설치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시장의 경우 위 업체의 제품은 “툽니형 분광구조로 온화한 환경을 유지하고 난연성 제품이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사유로,

○○○시장의 경우 “대체·대용품”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UV차단 기본코팅과 금속분말첨가로 자외선, 적외선 선별 차단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하여 줄 것을 광주지방조달청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에서는 2014. 11. 10.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실용신안 제품으로 수의계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폴리카보네이트 외)’과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명백한 사유로 대체·대용품이 없어 특허 등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요청”하라는 협의 공문(○○지방조달청 ○○

○○과-00000, 2014. 00. 00.)을 발송³⁾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근거 없는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구매 계약을 추진하였다.

더구나 「지원사업 지침」(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시설사업 집행 시 5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아케이드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 등 주요 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내용(주요자재 디자인, 형식 등)의 결정범위를 넘어 특정제품을 선정케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위반케 하였다.

그 결과 특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되어 시장 아케이드 지붕재(폴리카보네이트)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공사에 있어서는 주요 골조 공사와 지붕자재 간 분리 발주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 시 복합시공에 따른 책임소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에 대해 곤란한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2. 하자검사 및 하자 공사 미이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2 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 아케이드(2차구간)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2015. 12. 11)”과 관련 ○○지방조달청 의견(○○지방조달청 ○○○○과-00000, 2015. 00. 00)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제품에 대하여는 대체·대용품 유무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진행하게 되어 있는바 수의계약 검토서에 따라 내·외부 심의회 개최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회신 요청

따라서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완료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한 결과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시장과 ○○시장의 지붕에서 다수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통보를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⁴⁾ 시장상인 등이 누수에 따른 판매상품의 훼손 및 불편사항 등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시장, ○○○시장 아케이드 설치 누수 등 하자발생 현황

	
○○시장 아케이드 누수전경(하자책임 기간중)	○○시장 아케이드 누수전경(하자책임 기간중)
	
○○○시장 아케이드 누수전경(하자만료)	○○○시장 아케이드 누수전경(하자만료)

※ 광주광역시 ○○시장, ○○○시장 현장조사 실시('17. 9. 5.) 자료

4) ○○○시장 아케이드 천장 추락 사고('17. 0. 00.) 사업책임자(담당과장) 징계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시장 및 ○○시장의 아케이드 누수 등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조치를 취하고,

②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방법을 선정하여 특정제품의 구매를 사유로 수의계약 등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방법을 선정하여 특정제품의 구매를 사유로 수의계약 등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